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23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참고자료 1] 2024년 국가별 모니터링 현황	8
[참고자료 2] 동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	9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5인

2. 제안일자 : 2025년 4월 1일

3.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재외공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 등 사업 시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참여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이 이를 사업의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u>참여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 ----- ----- ----- ----- -- <u>참여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주관기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2024년 기준 6조를 넘어선 상황에서¹⁾,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상, 재외공관이 현장의 사업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환류하는 과정이 긴요하다 할 것임.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지 점검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3조제1항,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매뉴얼」이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재외공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은 ‘재외공관이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 매뉴얼」은 재외공관을 통해 실시되는 무상원조 사업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담고 있음.

1) 2023년 4조 7,771억원 → 2024년 6조 2,629억원

<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지 점검 관련 규정 >

구 분	조 문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외교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사업의 이행 점검을 위해 외교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을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⑥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 ⑦ 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은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재외공관이 관계 부처를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입각하여 선정하며, 대상 사업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 심의 시에 반영하고 있음.

< 재외공관 무상원조 모니터링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배경)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7.6월)는 주관기관 이행점검 강화 및 재외공관의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최소 연 2회 보고)을 의결
 -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17년 시범 운영을 거쳐 '18년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무상원조 사업 상시 모니터링 실시 중
 - (주관기관) 계속사업(30% 이상 진행) 및 종료사업(종료 7년 이내) 중 모니터링 후보사업을 재외공관에 전달
 - (재외공관) 후보사업 중 모니터링 희망사업(2배수) 선정·보고
 - (관계부처) 재외공관 선정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 (재외공관) 최종 모니터링 대상사업(중점협력국 7개 이상, 일반협력국 5개 이상) 선정·보고* 후 연중 모니터링 실시**
 - * 제7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4.2월) 집행관리 강화방안 의결에 따라 대상 사업 확대
 - ** 수원국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현황, ▲수원국과 협의 상황, ▲만족도, ▲효과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제시
 - 필요 시 주관기관은 재외공관 현장 방문 예산 및 민간전문가 참여 비용 지원
 - (주관기관)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 부처에 공유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 심의 시 반영(차년도 국개위 보고)
 - ※ 재외공관 모니터링 실적은 공관장 성과 평가 시 반영
-
- (경과) 재외공관에 후보 사업 전달('24.1월)
 - 재외공관 모니터링 희망사업보고('24.2월)
 - 사업정보 제공('24.2월) → 재외공관 최종 목록 보고('24.3월)
 - 모니터링 실시(~'24.12월)
 - 부처별 결과 공유 및 조치계획 수립('25.2월)

자료: 「2024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외교부, 2025. 8.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모니터링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함.

또한,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²⁾에서 정부는 재외공

2) 2025. 8., 관계부처 합동

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정부의 추진 방향과도 부합함.

다만, 개정안은 재외공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재외공관이 이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4년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2,400여개의 모니터링 후보 사업³⁾을 선정하여 전달하였는데, 이 중 재외공관에서 최종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 사업 수는 302개로, 후보 사업의 12% 수준임.⁴⁾ 외교부도 동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사업 현황 점검 및 파악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현재 재외공관의 조직 및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등으로 수정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유상원조의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이 오히려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시키고 현장의 혼선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⁵⁾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뉘어 분절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것임.

3) 무상원조 사업 중 2024년 초 기준으로 30% 이상 진행된 계속사업과, 종료 7년 이내의 사업임.

4) 【참고자료 1】 2024년 국가별 모니터링 현황(p.8)

5) 【참고자료 2】 동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p.9)

재외공관의 모니터링에 관한 현행법령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원조의 경우 재외공관이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대신,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유상원조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있음.

따라서 유상원조 사업에 대한 재외공관의 현황 파악 및 보고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총괄·조정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간의 협의를 우선 진행하여 그 결과를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사업의 범위를 비롯한 현황 점검 및 보고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위규정 입안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2024년 국가별 모니터링 현황

지역	국가명	후보 사업 수	수행 사업 수	지역	국가명	후보 사업 수	수행 사업 수
아시아 · 태평양	네팔	47	7	아프 리카	에티오피아	82	7
	사모아(뉴질랜드)	2	1		우간다	58	7
	동티모르	25	5		이집트	21	7
	라오스	132	7		잠비아(짐바브웨)	7	1
	말레이시아	2	2		짐바브웨	8	1
	몽골	124	7		차드(카메룬)	3	2
	미얀마	99	7		카메룬	11	3
	방글라데시	38	7		케냐	39	5
	베트남	190	7		코트디부아르	13	5
	부탄(방글라데시)	14	3		탄자니아	55	8
	솔로몬제도(PNG)	5	1	중동 · 유럽 · CIS	벨라루스	5	2
	스리랑카	61	7		세르비아	20	5
	인도	5	2		아제르바이잔	23	7
	인도네시아	116	7		요르단	19	5
	캄보디아	141	7		우즈베키스탄	106	7
	태국	12	5		이라크	20	4
	파키스탄	23	7		조지아	6	1
	파푸아뉴기니	5	1		카자흐스탄	15	1
	피지	14	5		키르기스스탄	46	7
	필리핀	105	8		타지키스탄	17	3
아프 리카	가나	45	7	중남미	투르크메니스탄	3	1
	나이지리아	10	5		팔레스타인	12	5
	남아공	2	1		과테말라	24	3
	레소토(남아공)	3	2		니카라과	7	1
	르완다	45	7		도미니카공화국	22	4
	마다가스카르	3	2		볼리비아	31	7
	말라위(짐바브웨)	11	2		브라질	9	1
	모로코	10	4		아르헨티나	2	1
	모리타니아(모로코)	-	1		에콰도르	29	5
	모잠비크	31	2		엘살바도르	20	4
	민주콩고	23	2		온두라스	16	5
	보츠와나(남아공)	8	2		코스타리카	14	2
	세네갈	37	7		콜롬비아	54	7
	수단	7	1		파라과이	54	7
	알제리	16	5		페루	73	7
	앙골라	3	1	계		2,358	302

자료: 외교부

【참고자료 2】 동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

- **(현황)** 유상원조 사업에서 기획재정부는 수원국 및 수출입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진행단계별*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중

* 사업 발굴, 승인, 차관계약 체결, 사업진행 및 관리, 사후평가, 사후관리 등

- **(검토내용)** 재외공관의 추진상황 별도 파악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보고는 오히려 사업추진 동력을 저하시키고 현장의 혼선만 초래할 우려

- ① 수원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유상원조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사업의 진행단계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 [사업 발굴 ~ 승인 ~ 차관계약 체결] 수원국 재무부 및 사업수행부처,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협조용자 기관(다자개발은행) 등
[사업진행 ~ 사후평가 ~ 사후관리] 수원국 재무부 및 사업수행부처,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협조용자 기관(다자개발은행) + 국내외 설계사, 시공사 등

- 수출입은행(현행)과 재외공관(추가)으로 현황 파악·보고 체계 이원화시, 사업현장에서 기관간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적시 대응 저해 및 이해관계자들의 카운터파트 인식에 혼선 유발

- ② 현재 유상원조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주관)**과 **수출입은행(위탁)**이 운용·관리

- 유상원조 사업 점검체계를 **별도의 타 법**에서 추가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복 소지

- ③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하고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아 유상원조 사업의 심사·조정 실시 중

- 재외공관의 보고에 따른 심사·조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충돌 소지

문 의 처
02) 6788-5264